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30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 안호영·한민수·정을호

신영대 · 박홍배 · 이학영

박 정・김태선・전진숙

이츄석 • 박해철 의위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,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, 채용광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제 한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음.

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며,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, 제4조 및 제10조 등).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채용광고의 내용)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 예상인원, 임금 수준,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 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"금지"를 "금지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, 무효로 된 부분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른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"채용대상자를"을 "채용 심사 단계별로 구직자의합격여부를"로, "채용 여부를"을 "해당 내용을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을 고지 받은 구인자는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인자는 해당 구직자에게 그사유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

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구인자
- 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구인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<u><신 설></u> | 제3조의2(채용광고의 내용) 구인 | | | | |
| | 자는 채용광고에 채용 예상인 | | | | |
| | 원, 임금수준, 근로내용 및 근 | | | | |
| | 로시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| | | | |
| |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| | | | |
| | <u>다.</u> | | | | |
| 제4조(거짓 채용광고 등의 <u>금지</u>) | 제4조(거짓 채용광고 등의 <u>금지</u> | | | | |
| ① (생 략) | <u>등</u>) ① (현행과 같음) | | | | |
|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| ② | | | | |
|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| | | | | |
|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| | | | | |
| 된다. <후단 신설> | 이 경우 불리하게 변경 | | | | |
| | 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 | | | | |
| | 여 무효로 하며, 무효로 된 부 | | | | |
| | 분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 | | | | |
| | 로조건에 따른다. | | | | |
| ③・④ (생 략) |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| | | | |
| 제10조(채용 여부의 고지) 구인자 | 제10조(채용 여부의 고지) <u>①</u> | | | | |
| 는 <u>채용대상자를</u> 확정한 경우 | 채용 심사 단계별로 구 | | | | |
| 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<u>채</u> | 직자의 합격여부를 | | | | |
| 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. 이 경 | | | | | |
| 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| <u>해당 내용을</u> | | | | |
| 준용한다. | | | | | |

<신 설>

제17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~ 3. (생략)

④ (생략)

| | | | _ | | |
|--|--|--|---|--|---|
| | | | | | • |

- 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을 고지 받은 구인자는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인자는 해당 구직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- (3) -----

-----.

- 1.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광 고의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구인자
- 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구인자
- 3. ~ <u>5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